

#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5-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나.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 제7조(센터의 지원)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본사업)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센터의 사업범위 규정
  - 제13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
- 나.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제16조(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

급여 이용자의 선정기준 등과 관련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제17조(장애동료 간 상담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동료상담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서울시에 등록된 강서구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관련 시설지원 및 장비확충, 운영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와 사회활동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10. 그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때 시설퇴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독거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7조(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된 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장애동료 간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그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본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사업
2. 권익옹호사업 및 지역사회 운동
3.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
4. 자립생활기술훈련사업

②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서비스
2.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3.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4.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5. 그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

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되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밖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예산과 결산)**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센터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 제4장 활동지원 급여

**제16조(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 급여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5장 그 밖의 지원

**제17조(장애동료 간 상담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인 차별과 소외, 배제 등으로 억눌린 감정으로부터 해방하고 자기신뢰를 회복하며, 인간관계를 재구축하여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동료상담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